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27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 의 자 : 김용민 · 최혁진 · 박찬대
박지원 · 전현희 · 박은정
이성윤 · 민형배 · 서영교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하되 재판의 모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사건이 이미 계속된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 등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편의2(제5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편의2 사건의 배당

제55조의3(사건의 배당) ① 사건배당은 법원장이 주관한다.

② 공정한 사건의 배당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사건의 배당은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무작위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지정 등 무작위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가. 동시심판의 필요성, 재판의 모순 방지의 필요성 또는 증인의

이중 출석·위증 방지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관련사건이 계속된 재판부에서의 배당이 필요한 경우

나. 소액사건·민사신청사건·민사집행사건·약식사건·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 등 경미한 사건인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무작위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배당할 수 있게 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사건은 해당 법관이나 그가 속한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르면 배당할 수 없거나 적정한 사건배당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사건

2.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검사로서 수사 등에 관여한 형사사건

3.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재직하였거나 소속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사실상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서 수임한 사건. 다만, 해당 법관이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하거나 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건배당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련사건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5편의2 사건의 배당</u> <u>제55조의3(사건의 배당) ① 사건</u> <u>배당은 법원장이 주관한다.</u> <u>② 공정한 사건의 배당을 위하</u> <u>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u> <u>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를 둘</u> <u>수 있다.</u> <u>③ 사건의 배당은 사건배당 주</u> <u>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무</u> <u>작위방식에 의하여야 한다.</u>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의</u> <u>지정 등 무작위방식 이외의 방</u> <u>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이 경</u> <u>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 등</u> <u>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u> <u>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u> <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u> <u>칙으로 정하는 경우</u> <u>가. 동시심판의 필요성, 재판</u> <u>의 모순 방지의 필요성 또</u>

는 증인의 이중 출석·위
증 방지의 필요성 등이 인
정되어 관련사건이 계속된
재판부에의 배당이 필요한
경우

나. 소액사건·민사신청사건
· 민사집행사건·약식사건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
판청구사건 등 경미한 사
건인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무작위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배당할 수
있게 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사건은 해당
법관이나 그가 속한 재판부에
는 배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르면 배
당할 수 없거나 적정한 사건배
당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사건

2.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검사로서 수사 등에
관여한 형사사건

3.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

는 법관이 재직하였거나 소속
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사실상 법무법인 또
는 법무조합의 형태로 운영되
는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서
수임한 사건. 다만, 해당 법관
이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하거
나 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
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사건배당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제4항제1호가목에 따
른 관련사건의 범위 등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